

전세버스 임차용역 약정서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이하 “성북구의회”이라 한다)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2014년도 하반기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하반기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에 참가하는 의원 및 수행공무원 등 타인의 안전한 수송 등을 위해 “사업자”가 신의 성실로 위 수송 업무를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코스)

운행코스는 현지 교통여건 및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차량사양 및 운행조건)

“사업자”는 “성북구의회”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차량사양과 운행조건으로 2014년도 하반기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에 참여하는 의원 및 수행 관계공무원 등 타인의 수송 등을 위해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16인승 리무진 버스 1대를 “성북구의회”의 책임 하에 차질이 없도록 운행하여야 한다.

① 차량사양 : 16인승 리무진 버스(출고된지 2년 이내, 냉·난방 완비)

② 운행조건

-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정비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할 것
- 운전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무사고 운전자로 할 것
- 세미나기간(전세버스 임차 운행기간)내 배차된 전세버스 차량의 세미나장소 이탈 및 다른 차량으로 중간교체 배차 금지
- 일정 변경에 따른 즉시 대응을 위해 수행공무원이 지정한장소 항시 대기 등 기타 약정조건 준수 등

제4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2014. 11. 6(목)일 및 11. 7(금) 총 2일

제5조(약정금액산출)

약정금액은 16인승 리무진 1대 850천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기사숙식비, 유류비, 도로통행료를 포함한다.

제6조(임차요구)

- ① “성북구의회”는 “사업자”에게 임차소요 3일전까지 임차요청을 하여야 하며, 통보 방법은 서면, 유선, 구두 방법 등도 포함한다.
- ② 임차 요구시 “사업자”는 “성북구의회”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1시간 전까지 차량을 준비시켜야 한다.

제7조(임차시간)

“성북구의회”가 지정하는 출발지의 출발시간부터 제2조에 의한 운행코스를 마칠때까지, “성북구의회”의 사유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차량운행)

“사업자”는 차량운행 시 의원 및 수행 관계공무원 등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운행도중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제9조(임차차량)

“사업자” 회사의 차량을 준비시켜야 되며, 차량운행 도중 약정위반으로 “성북구의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방법)

“사업자”는 “제2조”의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북구의회”의 일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한다.
3. 대형버스 운전경력 10년 이상이고 사고경력이 없는 모범 운전자로 하여금 운행토록 한다.
4. “성북구의회”의 운행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합(공제조합)보험에 가입한 출고된지 2년 이내의 최신형 버스를 운행토록 한다.
6. 기타 원활한 세미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북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 ① 전세버스 운행요금은 수송이 종료된 후 약정단가에 의해 계좌이체 지급한다.

제12조(약정해지 및 변경)

- 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북구의회”가 요구한 기일내(시간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않는 등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북구의회”는 본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 ② 전항 이외에 “성북구의회”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 약정을 해지(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변경) 예정 1일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약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약정해지 예정 1일전까지 “성북구의회”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성북구의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운행요금의 환수)

“사업자”는 본 약정 체결이후(운행요금 지급 후)라도 제11조의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책정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성북구의회”로부터 감액 또는 환
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책임)

본 약정 이행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제2조의 전세버스가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진다.

제15조(사고처리 및 보상)

-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성북구의회”는 차량손해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성북구의회”가
부담하는 면책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업자”는 “성북구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제출)

본 약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성북구의회”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
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본 약정에 관한 모든 소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임의규정 등)

본 약정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는 “성북구의회”
와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어구해석)

본 약정서상의 어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성북구의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기타사항)

- ①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법규에 의하되 동 법 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 ② 본 약정서는 “성북구의회” 와 “사업자”의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 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 ③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와 “사업 자”가 각각 날인하고 양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10 월 일

“성북구의회” : 사무국장

정 은 수 (인)

“사업자” : (주)버스 25시 대표자

김 중 배 (인)